민생토론회
후속 규제개선 조치

2024. 6.

국토교통부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1

Ⅱ. 대응방향 2

Ⅲ. 세부 추진과제 3

Ⅳ. 향후 추진계획 12

Ⅰ. 추진배경

□ **주택시장**의 **근본적 안정**과 **국민 주거환경 개선**을 위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원활한 주택 수급을 제약하는 **규제 정상화**가 **필요**

○ 정부는 그간 **민생토론회***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해 오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**규제 개선**을 지속 추진

*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1.10), 도시 공간·거주·품격 3대 혁신방안(3.19) 등

○ 그 결과 **재건축·재개발, 청약 등**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규제들이 **합리적**으로 **개선**되었고, 도심 내 양질의 **주택공급 기반**이 **강화***

* (정비구역 지정) '18~'22년 年평균 35건 → '23년 52건 / (안전진단 통과) 13건 → 163건

□ 다만, 꾸준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**주택공급**을 **저해**하는 **규제**들은 여전히 남아 **시장**의 **걸림돌**로 **작용**

○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**저출생·고령화 등**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**주택 수요**에 **부응**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

□ 정부는 **민생토론회 후속**으로 **주택공급**을 **확대**하고 **국민 주거불편**을 **해소**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 착수

○ 국토교통부 내 「**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/F**(팀장: 주택토지실장)」 **신설**(3.25) 후 그간 T/F 회의를 통해 과제 발굴·검토

○ **업계 간담회, 서울시 정책 협의회,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**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·기관과도 **충분히 소통**하면서 의견 수렴

☞ **주택시장 상황과 국민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그간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**

Ⅱ. 대응방향

민생토론회 후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안정

주택사업 활성화	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	■ 재건축·재개발 : 사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■ 소규모정비 : 사업 추진대상 확대 ■ 도심복합사업 : 추진방식 유연화 ■ 건축·인허가 규제 합리화
	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	■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화 ■ 지분 양도시 승계인 요건 완화 ■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요건 완화
	대토보상 활성화	■ 주택 분양권 선택권 확대 ■ 他사업장 토지로 보상 ■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 ■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
	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	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역전현상 해소 ■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 ■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및 준공 전 재정비
국민 주거불편 해소	청약 제도 합리화	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■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■ 저출생·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
	임대보증체계 안정화	■ 전세금반환·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명확화 ■ 담보인정비율 적용 유예
	공공주택 공급·운영방식 개선	■ 뉴:홈 나눔형 재구조화 ■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■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신설

Ⅲ. 세부 추진과제

1 주택사업 활성화

◈ **도심 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선,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, 민간 임대리츠 및 대토보상 활성화로 주택공급 지원**

1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

[재건축·재개발]

1 **(정비계획 변경)** 역세권 공공분양 뉴:홈 공급이 용이하도록 **정비계획**의 **경미한 변경 사유***에 **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**(뉴:홈 추가 공급 등) **추가**

* 현재는 정비구역 면적 또는 용적률 10% 미만 조정 등 사유 존재
* 역세권에 용적률 완화(법적상한 1.2배) 시 일부를 뉴:홈으로 공급 가능(도시정비법 개정, '24.1)

정비계획 변경 제도개선 전·후 비교

현행	변경입안 ➡	주민·지방의회 협의 ➡	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➡	정비계획 변경
개선	변경입안	(생략) ➡	(생략)	정비계획 변경

2 **(국공유지 동의)**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**국공유지 재산관리청**의 **명시적 반대**가 **없을 경우 사업 동의**로 **간주**

*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판례 법리를 법제화한 것으로 조합설립 요건 충족(재개발: 면적 1/2 이상 동의) 등에 발생하는 애로해소 가능

3 **(전문조합관리인 선정)** **조합 집행부 부재**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**지자체**에서 **전문조합관리인***을 **선정**할 수 있는 **요건 완화****

* 조합임원 업무 대행을 위해 변호사·회계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
** (現) 6개월 이상 부재 시 선정 가능 → (改) 2개월 이상 부재 시 선정 가능

4 **(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)** **정비사업 전문관리업***(정비업체)에 신규·우수업체 진입이 용이하도록 업체 등록 시 **필요인력**의 **요건 완화****

* 조합 전문성 보완을 위해 조합총회 개최,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 대행

** (現) '03년(도시정비법 제정) 이전부터 근무한 '기술인력'만 필요 인력으로 인정
(改) '03년 이후 근무자도 경력·실적·교육이수 요건을 갖출 시 '기술인력' 인정
[예: 경력3년 이상 정비업체 근무, 실적최근 5년 이내 정비사업 참여, 교육기본 60시간 & 3년 주기 30시간]

[소규모 정비]

5 **(사업시행구역 확대)** **가로주택정비사업** 추진 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**가로구역-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 일치**

* (現) 가로구역 1.3만㎡이하, 사업시행구역 1만㎡이하 → (改) 모두 1.3만㎡ 이하

6 **(접도요건 완화)** **소규모재개발**사업의 2면 접도요건을 **일정 폭 이상 도로**에 **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**토록 요건 완화

* (現) 2면 이상 접도[모든 도로 폭은 4m 이상 & 최소 한 곳은 6m 이상]
(改) 2면 접도요건에 추가로, 1면 이상 접도[도로 폭은 20m 이상]

[도심복합사업]

□ **(리츠 활성화)** 7**리츠 참여형**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**관리처분계획**을 **수립**하지 **않아도 되는 부지확보 비율**을 **완화**(100→75%)

* (現)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부지 100% 확보 요건으로 사실상 충족 어려움
(改) 리츠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부지 75% 이상 확보로 완화

○ 8**주택도시기금**(주택계정) **리츠 출자대상**에 **공공 도심복합사업 추가**

* (現) 임대리츠, 토지지원리츠 → (改) 공공 도심복합사업 리츠 추가

9 **(부담금 감면)** 도심복합사업의 **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**을 **일반 정비사업**과 **동일한 감면** 수준으로 적용

* (現) 전체 연면적 대상, 50% 감면 부과 → (改) 늘어난 연면적 대상, 75% 감면 부과

10 **(공공기여 유연화)**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공·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**기부채납 가능시설**을 **확대**

* (現) 도로·공원·주차장 등 공공·기반시설 → (改) 공공임대주택, 기숙사 등 추가

[건축·인허가 규제 합리화]

11 **(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설치)** 주거 용도가 아닌 **주민공동시설**은 공동주택 등 **주거용 건축물**의 **지하층**에 **설치**할 수 있도록 개선

* (現) 침수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 지하층에 주거 관련시설 설치 제한
(改) 피트니스센터·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(부속용도)은 예외적 설치 허용

12 **(사업주체 변경 간소화)** **경·공매**로 주택건설현장 내 **토지**와 **건축물**의 **소유권**을 **이전**받은 자는 **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주체**로 **변경** 허용

* (現)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필요 → (改)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로 갈음

2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

13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화

○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**물가조정**으로 인한 **공사비 증액기준 개선** 및 **착공후 공사비 조정 한시 허용**

* (건설형) 민간제안, LH택지공모 / (매입형) 정비사업 연계형

- **(착공 전)** 현재 공사비 **증액 인정범위**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**조정**하고 있는 **항목**(건설형 통상변동분, 매입형 추가할인율)을 **합리적 완화**

구분	현행	개선
건설형	증액 공사비에서 '사업경과기간'과 통상변동분(年 3%)을 곱한 비율 만큼 차감	'사업경과기간'에서 문화재 발견 등 **사업자 귀책**이 **없는 기간 제외**
매입형	증액 공사비를 고려한 매입가격에서 '추가할인율(약 2% 수준)' 만큼 차감	**'추가할인율' 폐지**

- **(착공 후)** 착공 전 인정범위 내에서 **3년간**('24.7~'27.6) **공사비 한시 조정**

▸ (신규 사업장) 추가 출·융자없이 **공사비 증액**을 위한 **예비비 편성**

▸ (기존 사업장) **PF 조정위원회**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

14 지분 양도 시 승계인 요건 완화

○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**신규 리츠·펀드**도 **임대리츠 지분 양수**가 가능토록 **필요조건 충족시 신용평가등급 요건 적용 제외**

* (現) 양수인의 신용평가등급이 '양도인' 이상이거나 'A-' 이상인 경우 지분양수 가능
(改) 필요조건 충족시 신용평가등급 요건 적용 제외

* [**필요조건**] ①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% 이하로 매각하고, ② 간접투자기구(리츠·펀드 등)를 구성하면서 ③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

15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요건 완화

○ **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**에 보다 많은 **시공사**가 참여할 수 있도록 **주택 건설 실적요건 완화**(현행 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유지)

구 분	현 행	개 선
필수요건	신용평가등급 BB+ 이상	
선택요건 (1개 충족 필요)	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	
	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**300세대 이상**	**최근 5년간** 주택건설실적이 **300세대 이상**

3 대토보상 활성화

16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까지 확대

○ **평면적인 토지**를 보상하는 **대토보상** → **입체적**으로 **확대**하여 보상권자가 **주택 분양권**으로도 **보상**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

* (現) 보상 방식으로 현금보상, 채권보상, 대토보상(토지) 존재
(改) 대토보상 방식에 토지 외 주택 분양권 보상도 추가

*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

17 他 사업장 토지로까지 대토보상 허용

○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**대토부지**를 **동일 사업시행자**의 **他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**으로도 **보상 가능**토록 허용

* (예) 3기 신도시·용인국가산업단지 간 대토보상 토지의 교차를 허용

18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

○ 대토보상 토지의 **전매제한 규제**로 인해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장기간 동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**전매제한 종료시점 단축**

* 다만, 공공주택특별법과 동일하게 전매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투기 유발 최소화

전매제한 완화 전·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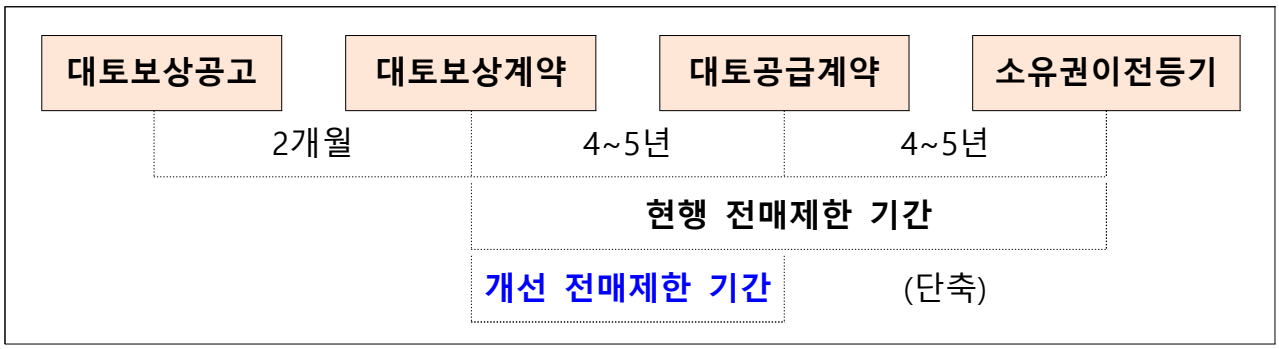

19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

○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**보상권자**가 **직접 주택사업**을 **시행**한 경우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**주택**의 **우선공급권 부여**

주택 우선공급권 제공 절차(예: 리츠 개발방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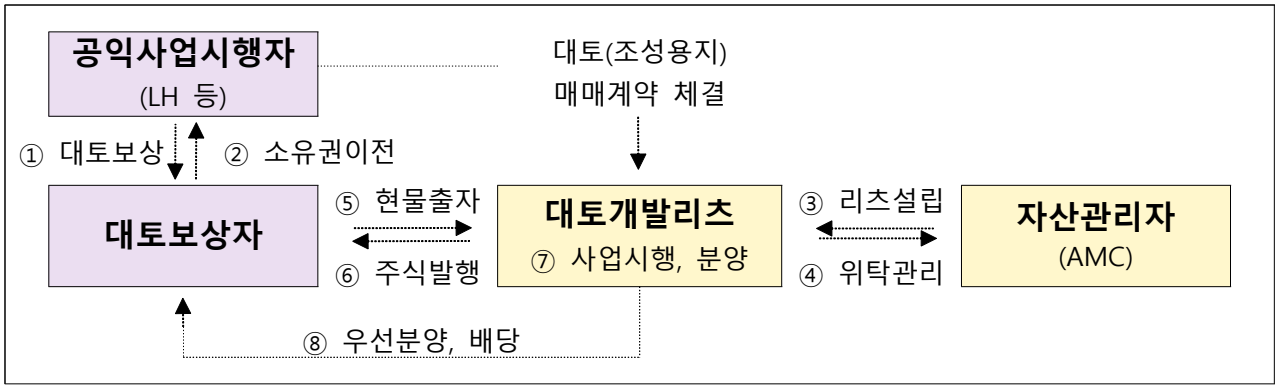

4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

20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역전현상 해소

○ **도심 내 취약 주거지**인 **쪽방촌**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**주택정비사업**(공공) 추진 시 **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**

* 현재는 토지주 분양가(현물보상)가 일반분양 분양가 보다 높은 '분양가 역전현상'으로 인해 토지주의 사업참여 저조

* 공공 도심복합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들도 적용제외 기 조치(주택법 개정, '23.12)

21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

○ **공공주택지구 내**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**조성사업 일부***를 **민간업체**가 **개발**하고, 그 **대가**로 **토지**를 **공급**하는 **대행개발 방식 도입**

* 민간은 도급사 지위에서 설계·조성공사·기반시설공사·택지분양 대행

* (現)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행개발 불가(택지개발촉진법 등 他사업법령은 택지 대행개발 기 도입)
(改)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대행개발 도입으로 민간참여 방식 다각화

22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및 준공전 재정비

○ **공공시설용지**가 준공 후 장기 미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에 **복합용도 부여**를 **가능**하게 하고, **준공 전 재정비 추진**

- **(복합용도)** 토지이용계획에 공공시설용지는 **공공시설 외 근린생활시설·업무시설** 등 **복합용도 부여 허용**

- **(준공 전 재정비)** 공공시설용지 미매각이 예상될 경우 **준공 전 유보지 등으로 용도 전환 추진**

2 국민 주거불편 해소

◈ **변화된 시장 상황과 주거환경 여건에 맞게 청약 및 공공주택 운영 방식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**

1 청약 제도 합리화

23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

○ **민영·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**했던 **종전 입주자저축**(청약예·부금 등)을 **모든주택 유형**에 **청약**할 수 있는 **주택청약종합저축**으로 **전환 허용**

* 통장 가입자가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조건

- 전환 시 **종전 통장**의 **기존 납입 실적***들은 **그대로 인정**하고, **청약 기회**가 **확대**되는 유형은 **신규 납입분**부터 **실적 인정**

* (청약예·부금)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'통장가입기간'
(청약저축)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'납입횟수' 및 '월납입 인정금액'

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

구 분	종전 청약통장			주택청약종합저축
	청약부금	청약예금	청약저축	
청약유형	민영주택(85㎡이하)	민영주택	공공주택	모든 주택(민영+공공)
관리주체	시중은행	시중은행	주택도시기금	주택도시기금

24 청약통장 월납입금(저축총액) 인정한도 상향

○ '83년부터 유지 중인 **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**를 그간 가구소득 상승,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**월 25만원**으로 **상향**

* 현재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

[25] 저출생·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

○ **지자체**가 지역사회의 **저출생·고령화 대응 목적**으로 **특별공급** 물량 배정이 가능토록 조정(지자체 기관추천 특별공급 항목에 추가*)

* (現)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, ② 외국인 투자 촉진, ③ 전통문화 보존·관리
(改)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항목 추가

**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% 이내이나 시·도지사 승인시 10% 초과도 가능

2 임대보증체계 안정화

* (**임대보증금 보증**) **임대사업자**(임대인)의 **의무가입 보증**,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
(**전세금반환 보증**) **임차인 자율가입 보증**, 보증내용은 임대보증금 보증과 동일

□ (**공통 보증가입 기준**)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**강화된 보증가입 기준**은 **유지**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

* 보증가입 요건 : 주택가격 × 담보인정비율 ≥ 보증금 + 선순위채권

○ [26]**주택가격**은 **공시가격 인정비율 140%**를 **우선 적용**하고, **담보인정비율**도 **90% 적용 원칙 견지**(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'26.7월까지 유예)

○ [27]다만,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 후 HUG 인정시, **HUG**가 **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**이 **산정**한 **감정가**는 **사용 허용**('HUG 인정 감정가')

* (예)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 못한 경우

[28] (**임대보증 담보인정비율 적용 유예**) **기존 등록한 임대주택**은 **90% 적용**을 **유예**(~'26.7) 중이고, **법인**은 **일정요건 만족 시 유예 연장**

* 법인의 낮은 사고율, 사고율과 담보인정비율과 낮은 상관성 등을 고려

* (요건) ① 신용등급 CCC+ 이하 경우 경영실권자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와 연대보증 약정 체결
②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액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

3 공공주택 공급·운영방식 개선

29·30 뉴:홈 나눔형 재구조화

○ 공공분양 뉴:홈 나눔형*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수분양자의 거래 불편해소를 위해 **사인간 거래**를 **허용**하고 **정산기한**을 **도입**

* 현재 시세 70%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,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 70% 귀속 조건으로 공공환매만 가능[감정가 차익 = 공공환매 당시 감정가 – 분양 당시 취득가격]

- **(사인간 거래 허용)** **거주의무기간**(5년) **이후** 감정가 차익이 아닌 **실제 시세차익 기준**으로 **사인간 거래 허용**(70% 수분양자 귀속)

*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과거 공공환매만 가능했으나 사인간 거래허용(주택법 개정, '23.12)

- **(정산기한 도입)** **입주 10년 경과** 시 감정가 차익으로 **정산**하고, **이후** 처분 시 **시세차익**은 **100% 모두 수분양자**에게 **귀속**

* 일시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금 납부 유예, 저리분납 등 추가 지원 검토

31 기숙사형(공유형 주거시설)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

○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**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**을 **청년층**에서 **일반층**(고령자 등)으로 **확대**

*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동별 또는 단지별로 매입하여 시설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(시세 30% 수준, 최대 10년 거주 가능)

32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신설

○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**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**을 **자율적**으로 **설정**할 수 있도록 **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신설**

* 수요자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임대주택(공모사업으로 선정)

* (現) 고령자복지, 일자리, 청년 등 특화임대 존재→ (改)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추가

Ⅳ. 향후 추진계획

추진과제	조치사항	소관부서
1. 주택사업 활성화		
[1]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		
■ 공공주택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	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■ 국공유지 동의 간주	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 확대	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■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	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■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확대	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■ 소규모재개발사업 접도요건 완화	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개정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■ 리츠 참여형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제외대상 확대	도심복합개발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
■ 도심복합사업 리츠 기금 주택계정 출자	주택도시기금 출자업무 시행세칙 개정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
■ 도심복합사업 광역교통 부담금 감면 특례 신설	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
■ 공공 도심복합사업 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	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
■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설치 허용	건축법 시행령 개정	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
■ 경·공매 사업주체 변경 간소화	법제처 유권해석	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[2]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		
■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화	HUG 내규 개정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■ 지분 양도시 승계인 요건 완화	HUG 내규 개정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■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요건 완화	HUG 내규 개정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[3] 대토보상 활성화		
■ 주택 분양권으로 선택권 확대	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■ 他 사업장 토지로 보상 허용	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
추진과제	조치사항	소관부서
■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	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■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	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④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		
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역전현상 해소	주택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
■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	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
■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및 준공전 재정비	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	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
2. 국민 주거불편 해소		
① 청약 제도 합리화		
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, 은행 시스템 개편, HUG 세칙 개정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■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, 은행 시스템 개편, HUG 세칙 개정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■ 저출생·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② 임대보증체계 안정화		
■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% 우선 적용	공시가격 적용비율(고시) 개정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■ HUG 인정 감정가 도입	(임대보증)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(전세보증) HUG 내규개정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주택기금과
■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적용 유예	HUG 내규 개정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③ 공공주택 공급·운영방식 개선		
■ 뉴:홈 나눔형 사인간 거래 허용	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■ 뉴:홈 나눔형 정산기한 도입	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	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
■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대상 확대	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■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신설	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	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